

私有財産權의 基礎 -헤겔 '法理學'에 나타난-

陳伍

一

「격구로선 辨證法」의 方法에 依하여, 그의 全哲學體系를 建設한 「헤-겔」에 있어서, 私有財産權은 如何히 置礎 Begriinden되었는가. 新興獨逸聯邦의 빛나는 哲學者이든 그는, 바로 그재문에 그가 가장 힘을 들인 國家論에 있어서, 自己自身の 方法-辨證法的 方法으로 因하여, 宿命的 破綻속으로, 쫓겨들어가지 아니치 못하였다. 何故오하면, 그 以後의 世界史의 客觀的 發展은, 그에 依하여 「自覺的, 道義的, 實體」라 불니우고, 「家族의 原理 及 市民社會의 原理의 統一」에까지 놓혀진, 當時의 國家-특히 「프러시아」의 王國은, 決코 그 自身, 한 개의 이러한 實體가 아니고, 強敵英佛을 압해 두고, 獨逸統一의 野望에 불타오르든, 新興獨逸뿌르조아지-들의, 集中的, 政治的, 形態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 即 그것은 決코 「헤-겔」이 말하는 것 갓흔 實現된 絶對的 精神이 아니라, 그 自身 또한 發展하는 理念-「헤-겔」의 規定을 좇치면-의 一般階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具體的인 實踐에 있어서 보이기 재문이다. 그에 依한 私有財産權의 置礎는, 그러나, 이와 갓흔 그 自身の 方法과 矛盾되는 破綻을 보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置礎도 또한, 그 獨特의 「격구로선 辨證法」의 方法을 좇친 것인 點에 있어서, 다른 것의 境遇와 족음도 달음이 업다.

「헤-겔」을 좇치면, 法律의 出發點이 되는 것은, 人格이오, 物은, 그 속에서 人格이 自己의 定在를 얻는 外的領域이다. 人格은 한 直接的 規定임으로, 그것은 또, 한 抽象이다. 따라서 人格으로서의 各人은, 반듯이, 物의 우에 自己의 意志를 定置함에 依하여, 그의 定在를 어더야 된다. 이곳에서 各人의 物에對한 權利가 成立된다. 이 權利는, 即 絶對的 領有權이 아니면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要컨대, 그에게 있어서 財産權의 基礎가 되는 것은, 具體的인 무엇이 아니라, 無限히 自己發展을 하는 絶對的 精神의 一發

展段階를 形成하는 抽象的인 人格이다. 내가 그의 私有財産權 置礎도 또한 「각구로션 辨證法」의 方法을 좇친 것이라고 하는것 은, 正히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헤-겔」의 辨證法 及 乃至 그것이 具體的으로 適用된, 그의 財産權의 置礎를, 批判하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이 部分에 關한 그의 論議를, 그의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 詳細히 追跡해보라는 것이다. 批判은 自然히 別個의 課題이다.

二

「헤-겔」의 法理學은, 辨證法을 그 研究方法으로 할 뿐아니라, 法理學體系 그것도 또한, 辨證法의 方法을 좇차 建設된 그의 全哲學體系의 一部를 成하는 것이다. 그는 于先 「哲學體系」 Enc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17에서, 그의 全哲學體系의 一部分으로 法理學을 取扱하고, 後에 「法理學綱要」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에서, 보담 詳細하게 自己의 法理學說을 展開 식히었다. 나도 또한, 지금, 敘述의 順序上, 그의 法理學이, 그의 全哲學體系에 잇서서, 如何한 地位를 占하고 잇는가를, 一瞥하고 저한다.

누구나 아듯이, 「헤-겔」哲學의 出發點이 되는것은 理念 Idea이다. 理念은, 그러나, 그 即自態 An sich에 잇서서는, 全然히 抽象的 Abstrakt 이다. 싸러서 그것은 完全한 定在 Dasein 를 엇기 爲하야, 于先自然 Natur이 되는바, 自然은 他在態 Fur sich 에 在한 理念임으로, 이것은 바로 다시 自己에게로 도라가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自己에게로, 도라간 形姿가, 이르는바 精神 Geist 으로, 「哲學體系」의 後半의 對象을 形成한다. 精神도 即 自的으로 是 또한 主觀的, 自然的, 規定 Subjektive, naturliche Bestimmung 으로, 아즉 法理學의 對象이 됨에 이르지 못한다. 精神은 絶對的 精神 Der absolute Geist 에까지 發展하기 爲하야, 于先一般的, 客觀的 精神이 되는바, 이 客觀的 精神 objektiver Geist 이야말로, 法理學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法理學은 이 客觀的 精神의 모든 發展段階를 包含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은, 法理學이라는 名稱및해, 法, 主觀的意志의 法으로서의 道德, 家族, 市民社會 及 國家의 原理를 包含 식히고 있다.

客觀的 精神의 段階에 이르러, 비로소 法理學은 成立한다. 그러나 客觀的 精神은, 다시 또 세 개의 段階로 논하진다. 그것은, 即 自的으로는 抽象的 權利 Die abstrakte Recht오, 對自的으로는 道德 Die Moralität이오, 即 自及 對自的으로는 道義 Die Sittlichkeit이다. 財産權, 契約 等の 基礎가 되는 것은,

이 三者의 最初의 段階인 抽象的 權利다. 그러나 抽象的 權利는, 그 自身財產權을 置礎하지는 못한다. 財產權은, 抽象的 人格 Die abstrakte Personlichkeit이, 外物 Die aussere Sache 속에 그 定在를 잇는 곳에 成立하는 것으로, 抽象的 權利는, 于先自由로운 意志 Der frei Wille로서 人格이다. 卽 「헤-겔」은, 財產權의 基礎를 人格에 求한 것이다. 이곳에서 問題는, 이 人格의 概念規定으로 轉向한다. 우리는 于先人格의 概念을 밝히고, 그러한 後에 所有權의 置礎에까지 다시 나올 것이다.

*이곳에서 財產權이라 하였으나, 「헤-겔」이 實際로 置礎한것은, 所有權이다. 그러나, 나는, Berolzheimer도 말함과 가치, 「헤-겔」의 所謂 所有權 dius Eigentnmsreeht는, 이를 넓게 解하여 財產權 Die Vermoegensreehte의 뜻으로 알아도, 政히 支稱이 업을 썬아니라, 도리혀 正當하다고 밋는다.

三

「헤-겔」에 依하면, 法律의 基礎인 精神은, 그 出發으로서 意志를 갖는다. 그런데 意志는 元來 自由다. 由는 意志의 實體요, 規定이니, 卞러서 法律體系는 實現된 自由의 王國 Der Reich der verwirklichten Freiheit이다.

그러나 意志는, 처음부터 完全히 自由인것은 아니다. 그것은 于先 第一로, 純粹非規定性 Reine Unbestimmtheit 或은 自我의 純粹反省 Reine Reflexion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다. 이 段階에서는 意志는, 모든 制限과 모든 內容에 關係하지 아니한다. 그 內容은, 衝動, 需要, 貪慾을 通하여 直接으로 存在하는 것이거나, 쏘는 무엇을 通하여 所與된 것이거나 이를 不問한다. 卽 意志는 이 規定에 잇서서는, 絶對的 抽象 쏘는 普遍的, 制限업는 無限性 Allgemeine unbeschränkte Unendlichkeit 이다. 意志의 이 要素에 잇서서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自己를 解放하고, 모든 目的을 放棄할 수가 있다. 그 가운데 自我 Das Ich 가 잇고, 쏘는 自我의 속에 그것을 定立하는 모든 規定으로부터 抽象할 수 잇는, 이러한 絶對的 可能性 Absolute Möglichkeit은, 그러나, 否定的可能性이오, 悟性의 自由다. 意志는 이點에 잇서서는, 自我의 純粹思惟다. 卞러서 「헤-겔」을 좃치면 特殊한 能力인 思惟와, 맞찬가지로 特殊한 能力인 意志와는 난홀 것이 아니오, 쏘 思惟는 意志, 善意志를 爲하여 有害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要컨대 이러한 意志는, 텅뵤인 自由오, 否定的規定 Negative Bestimmung이다. 思惟者로서의 人間은, 이러한 能力을 갖지 아니한 짐승[짐승]과 달너서, 自己의 生命을 呑을 수가 잇으나, 生命을 呑는다는 것은, 卽 텅뵤인 自由가 아니면 아니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自我는 無差別的 非規定性으로부터, 內容的 規定 及 對象的 規定의 差別的 規定性 Differente Bestimmtheit으로 옮겨간다. 이

內容은 또 다시, 自然을 通해 所與된 것이거나, 또는 精神의 概念으로부터 生産된 것이거나를 不問한다. 이 段階에 잇서서 自我는, 自己를 被規定者로서 定立함에 依하여, 定在一般 Das in-uberhaupt 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自我의 有限性 또는 特殊性의 絶對的 要素이다. 即 이것은, 갓가의 意志의 消極的, 抽象的 自由의 否定이다. 普遍 속에 잇는 特殊一般과如히, 이 第二의 要素는 임의 第一의 要素 中에 包含되어 잇는 것이다. 다만 即 自的인 第一의 要素의 一定立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對自態에 在한 第一의 要素는, 그러나, 眞正한 無限, 具體的 普遍, 即 概念은 아니고, 다만 規定된 것 Das Bestimmte 片面的인 것 Das Einseitige 이다. 그것은 모든 規定性으로부터의 抽象인 故로, 그 自身 規定性을 包含치 아니치 못하는 것이다. 대개, 意志가 自由이기 爲해서는, 그것은 다만 意志할 Willen 뿐으로서는, 아즉 自由가 아니다. 그것은 반듯이 엇던것 Etwas 을 意志하여야 한다. 엇던 것을 意志한다는 것은, 制限이오, 否定이다. 그러나 單純히 抽象的 普遍을 意志한다는 것은, 結局 아모것도 意志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單純한 規定性에 긋치는 意志가 片面的인것 가치, 非規定的 意志도 또한 片面的이다. 그럼으로 意志는, 內容 及 對象에 關係함에 依하여, 抽象的 非規定性的의 段階를 超越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意志는, 그 具體的 形態에 잇서서는, 이 兩要素의 統一이다. 即 自己反省을 함에 依하여, 普遍에까지 도로 引어온 特殊이다. 이것을 個別性 Die Einzelkeit이라고 하자. 個別性에 在한 意志는, 自我의 自己 規定-自身을 否定하고, 即 規定, 制限하고, 그리고 나서 自同性 及 普遍性에 머물으라 하는 것 即 據自的 Bei Sich이고저 하는 自己規定이다. 自我는, 于先 純粹活動이오, 據自的으로 存在하는 普遍이였다. 그러나 이 普遍은, 自身을 規定하고, 據自的임을 긋치고, 他物로서 自身을 定立하였다. 그러나 이 兩者는 들이다, 徹底的으로 抽象的이오, 片面的이다. 모든 規定으로부터 抽象할 수 잇는 可能性인 自己意識도, 一定한 對象, 目的內容을 가진 特殊로서의 自己意志도, 함께 抽象的이다. 自由의 具體的 概念, 짜라서 그 眞正한 概念은 (모든 眞理는 具體的이다. Alle Wahrheit sind ke nkret - Hegel) 自己를 制限한 他物속에서, 據自的 存在를 엇는 自我가 아니면 안된다. 自己反省에 依하여, 普遍에까지 놓혀진 特殊를 對象으로하는 普遍이 아니면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自由다. 우리는, 이러한 自由를, 임의 反情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갓는다. 이 境遇에 우리는 勿論 偏我的이 아니다. 欣然히 他人과의 關係에 自身을 制限하나, 그러나, 이 制限에서 오히려 自己自身을 일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自由는, 非規定性 속에 잇는 것도 아니오, 規定性 속에 잇는

것도 아니요, 도리혀 이 兩者를 包括한다. 이러한 意志의 自由야말로, 重量이 物體의 實體가 되는 것과 가치, 意志의 概念이요, 實體요, 重量인 것이다.

四

그러나 간신히 即自的으로 自由한 意志는, 直接的 意志 또는 自然的 意志 Unmittelbarer oder natürllicher Wille 다. 自己規定을 하는 概念이, 意志속에 定立하는 差別의 規定은, 直接的 意志에 잇서서는, 直接的으로 存在하는 內容으로서 나타난다. 衝動, 貪慾, 性向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內容을 通해, 意志는 自然에 依하여 規定된다. 이 內容은 即自的으로는 合理的이나 이러한 直接性的의 形式 대로는, 아즉 合理性의 形式을 엇지 못한다. 이 內容은, 自我에 對하여야는 果然 一般的으로 나의 것이나, 이 形式과 그 內容과는 아즉 달는다. 그런 故로 이 段階에 在한 意志는, 아즉 有限的 意志다. 짐생일지라도 이러한 意志는 갖는다. 衝動은 自然속에 잇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속에 定立하는 것은, 全然히 自我의 意志에 달녓다. 그러면 이 衝動에 在한 客觀的인 것은 무엇인가. 如何히하여 이 客觀的要素는, 非合理性의 形式을 보리고, 眞理性 及 存在를 어들 수 잇는가.

意志 가우대 直接으로 存在하는 內容의 體系는, 다만 諸衝動의 聚合이요, 多樣임에 지나지 안는다. 各個의 衝動은, 一般으로 나의 衝動인 同時에 普遍, 非規定者이요, 가지가지의 그 滿足의 對象과 方法을 가지고 잇다. 意志는 이 二重의 非規定性에 在하여 個別性的의 形式을 엇기 爲하여, 限定的이 아니면 안되고, 또 그것은 一般으로限定的 意志로서만, 現實的 意志일 수 잇다. 이곳에 限定 Beschliessen 이라 함은, 모든 內容이 다만 可能임에 지나지 아니하는 非規定性을 止揚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限定에 依하여 意志는, 一定한 個人의 意志가 되고, 他人의意志와 區別되 난. 이 意識으로서의 有限性을 除한다 하면, 限定은 形式的임을 免치 못한다. 限定은 單純히 抽象的 限定일 뿐이고, 意志의 內容은, 아즉 그 自由의 內容 일수가 업다. 대개, 形式的이라함은, 意志規定이, 主觀과, 外的, 直接的, 存在인 客觀과의 形式的 對立인 半面을 指稱함이요, 內容이라함은, 意志規定이, 意志의 自己規定, 意志의 自己反省인 半面을 指稱하는 것인 까닭이다.

偉大를 願하는 者는, 自己를 制限할 수 잇서야 한다, Wer Grosses will, muss sich beschränken können고, Goethe는 말하얏다. 스스로를 制限하지 아니하는 意志는, 單純한 可能이다. 可能 Möglichkeit은 아즉 現實 Wirklichkeit 은 아니다.

다만 形式方面에 잇서서만 自己反省을 하면서, 據自的으로 存在하는 無限한 自我로서의 有限的 意志는, 그 內容인 諸衝動과 및 그 衝動의 實現과 滿

足を 超越한다. 內容은, 自我의 自己反省에 關하는 限에 잇서서는, 다만 나의 것일가 아닐가 하는, 可能物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自我는, 엇던 內容에 自己를 規定할, 即 內容에 잇서서, 自我를 爲한 外的 規定을 選擇할 可能性이다.

意志의 自由는, 이 規定에 잇서서, 肆意 Wilkur다. 肆意는, 自由로운, 모든 것으로부터 抽象되는 反省과, 內的 또는 外的으로 所與된 內容 及 素材에 對한 依存과의 兩者를 包含한다. 即 自的으로 目的으로서 必然的인 內容은, 同時에 反省에 對하여, 可能物로서 規定되야 잇슴으로, 肆意는, 意志인 同時에 偶然性 Zufälligkeit이다. 사람들이 普遍自由라고 생각하고 잇는 것은, 實狀은 이 肆意다. 그러나 肆意는, 單純히 自然的 衝動에 依하여 規定되는 意志와, 即 自及 對自로 自由한 意志와의 사이에 잇는 反省이다. 萬一 自由라는 것은, 하고저 하는 바를 할 수 잇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것은, 그것케 생각하는 사람의 思想의 缺陷을 意味한다. 이 肆意에 잇서서의 意志의 反省, 即 自己意識의 形式的 普遍성과 統一은, 意志自由에 關한 抽象的確實性 Abstrakte Gewissheit이오, 意志自由의 眞理性 Wahrheit 은 아니다. 왜그러나 하면, 이 反省은, 아주 自身을 內容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主觀과 對象과는, 아주 別物인 싸담이다. 肆意는 眞理性에 在한 意志가 아니라, 도리혀 矛盾으로서의 意志이다.

五

肆意는, 矛盾으로서의 意志임으로, 어느 한 사람의 衝動과 性向의 實現 또는 滿足은, 他人의 屈服 또는 犧牲을 要求한다. 아주 反省의 段階에 이르지 못한 意志의 最初의 內容인 衝動과 性向은, 自身을 모라, 모든 衝動을 滿足키 爲하여, 相互間 衝突하게 된다. 肆意에 在한 意志는, 打算的으로, 如何한 衝動에 依하여, 보담 만흔 滿足을 어들 수 잇는 가를 생각한다.

衝動의 價値判斷에 잇서서 辨證法은, 內在的인, 싸라서 積極的, 直接的, 意志가 規定하는 바는, 善이라는 現象을 갖는다. 그러나 이 規定은, 自然的, 規定인 以上, 그것은 精神의 自由와 精神의 概念에 反하는 否定的의 것으로, 惡인것이다. 이리해, 사람은, 本來善인 同時에 또한 惡이다. 그어느것이 올흔 가를, 이 段階에 잇서서 決定하는 것은, 또한 主觀的인 肆意다.

肆意는 純化 Reinigen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 純化의 要求는, 肆意를, 그 直接的, 自然的, 規定性及, 內容의 主觀성과 偶然性으로부터 解放하여, 그의 實體的 本質로 도리키라하는 普遍的 要求이다. 即 이것은, 衝動을, 意志規定의 合理的 體系가 되게 하고저 하는 것이다. 이와 갖치 肆意를 概念으로부터 把捉함이 업시는, 우리는 法律學의 內容에 到達할 수 업는 것이다.

衝動을 表象하고, 打算하고, 相互比較하고, 그 滿足의 手段, 結果等과, 그 滿足의 全體와 比較하는, 衝動에 對한 反省은, 이 素材(衝動)에 形式的, 普遍性을 주고, 衝動의 것즈른 表面을 純化한다. 이 反省에 在한 形式的인, 對自的으로 非規定的인, 그러나 그 素材에잇서서 規定性을가진 普遍性의 眞理는, 即 自己規定的인 普遍性이오, 意志오, 自由이다. 이에 잇서서 意志는, 그 內容, 對象, 目的에 對한 無限한 形式으로서 普遍性을 갖고 잇슴으로, 다만 即自的으로 썬만 아니라, 對自的으로도 自由로운 意志가 되는 것이다.

即自 及 對自로 自由로운 意志는 眞이오, 無限이다. 웨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 自身을 對象으로하고, ㅅ러서 對象은, 意志에 對하야, 他物도 制限도 아니고, 도리혀 對象 속에서만, 意志는 自身으로 도라오기 썬문이다. 다시 이러한 意志는, 임의 單純한 可能性, 能力 갖흔 것이 아니고, 現實의無限 Das Wirklich-Unen-dliche (infinitum actu) 이다. 웨그러냐하면, 概念의 定在또는 意志의 外的對象은, 그 內的인것 그것이기 썬문이다.

意志는, 이러한 自由性에 잇서서, 비로소 據自的이다. 그것은 自身에만 關係하고, 他物에 依存치 아니하기 썬문이다. 이 意志는 眞理自體이다. 웨그러냐하면 그것의 純粹概念은, 自身の 直觀을 그 目的 及 實在로 하는 썬문이다. 다시 썬 이 意志는 普遍이다. 웨그러냐하면, 그것은 모든 制限과 特殊的, 個別性을 自身 속에 止揚하얏기 썬문이다.

六

即自 及 對自로 存在하는 意志는, 이 即 法律學의 內容이 되는 것이다. 即自 及 對自로 存在하는 意志는, 主觀과 客觀의 矛盾을 止揚한 意志다. 如何히 하야, 이것을 止揚하얏는가. 主觀과 客觀의 意義를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이것을 反覆해 보라한다.

普遍, 사람들은, 主觀과 客觀은, 서로 確然히 對立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主觀과 客觀은, 肯定과 否定과 가치 抽象的의 規定이 아니고, 임의 具體的 意味를 가지고 잇는 것이다. 우리들이 主觀的이라고 말할 썬에는, 그것은 一定한 主觀의 目的을 가르친다. 主觀的인 것이라는 것은, 即 自的으로 存在하는 概念의 意味가 아니라, 意志의 自己意識의 方面, 意志의 個別性的 意味다. ㅅ러서 意志의 主觀性은, 于先第一로, 純粹形式, 自己意識과 自己와의 絶對的 統一의 뜻이오, 다음에, 肆意的 意志의 特殊性, 任意的 目的의 偶然的 內容을 말하고, 最後로, 自己意識에만 屬하는 內容의 片面的 形式을 말하는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意欲된 것 Das Gewollte-그 內容의 如何를 不問한다-이, ㅅ야흐로 다만 自己 意識에 屬함에 ㅅ치어, 아즉 實現되지 안은 目的인 半面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意志의 客觀性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그것은 于先 第一로, 自己自身을 規定으로하고, 그의 概念에 適合한다는 뜻이오, 다음에, 萬一 自己意識의 無限的 形式을 同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의 客觀 또는 狀態속으로 가려안저 버리는 意志의 뜻이오, 最後로, 主觀的 意志規定과의 對立에在한 片面的 形式이다. 卞라서 그것은, 또한, 外的 存在인 定在의 直接性을 指稱한다. 意志는, 이 意味에 잇서서 비로소, 그 目的의 實現을 통해 客觀的 이다.

主觀과 客觀의 矛盾을 止揚하고, 그 目的을 主觀的 規定으로부터 客觀的 規定으로 옮기고, 이리해 客觀性에 잇서서 據自的이고저 하는 意志活動은, 形式的 意識方法을 超越하여 存在한다. 形式的 意識方法에 잇서서는 客觀은 다만 直接的 現實性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理念의 實體的 內容의 本質的 發展은 抽象的 理念을, 그 理念의 體系의 總體를 向하여 規定하는 概念의 發展이다. 實體인이 理念의 總體는, 單純히 主觀的인 目的과, 그 實現과의 對立에는, 全然히 依存치 아니한다. 이리해, 이곳에 法律의 世界가 展開된다.

이리해 헤-겔은, Rousseau 以來의 個人主義的 法律 思想을 超越한다. 대개, 이들의 見解를 쫓치면, 意志의 實體的 基礎는, 卽自 及 對自로 存在하는 合理的 意志가 아니고, 特殊의인 個體요, 自己의 肆意에 在한 個別的인 사람의 意志이엇섯다. 「自我의 自由 또는 肆意가, 一般的 法則을 卞러, 各人의 肆意와 共存할 수 잇기 爲하여, 이 自我의 自由 또는 肆意在 制限 하는것」으로써, 法律의 主要要素를 삼은것은, 또한 이러한 個人主義的 思想에 立脚한 Kant의 法理論이엇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은, 一面에 잇서는, 다만 消極的 規定, 制限的 規定에 지나지 아니하고, 他面 그의 積極的 規定은, 形式的인 同一律과 矛盾律 박계는 包含하지 아니한다.

要컨대, 헤-겔의 所謂 卽自 及 對自로 自由로운 意志 Der an-und-fur-sich freie Wille 라는 것은, 主觀的 抽象的인 意志가, 衝動에 依하여 各種의 對象속으로 個別化하면서, 自己反省을 함에 依하여, 다시 普遍的 社會的인 意志에까지 놓혀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法理學 體系는, 이 意志가 다시 三段의 發展을 함에 依하여, 開된다. 그것은 于先 最初의 段階에 잇서서는, 自由의 直接的, 抽象的, 概念으로서, 人格이다. 그의 定在로서는, 外物을 갖는다. 이것은 卽 抽象的 法律 또는 形式的 法律의 領域이다. 그러나 이러한 意志는, 바로 곳 對自態로 옮겨간다. 意志는 以外的 存在로부터, 主觀的 個別性에 잇스면서, 自己 反省을 한다. 이것이 意志 發展의 第二段階이니, 道德의 世界는, 卽 이곳에서 展開된다. 最後로 이 두

가지의 抽象的 要素는 道義에 있어서 統一되야, 眞正으로 具體的인 眞理가 된다. 이 段階에 있어서, 自由로운 意志는, 主觀的 意志인 同時에, 實體이며, 實在며, 必然이다. 그것은 即 自 及 對自로 普遍的인 存在에 있는 理念이다. 道義 는다 시또 三段의 段階를 經由하여 發展하여, 그 最後에 있어서, 國家에 到達하난. 國家의 原理로써, 헤-겔의 法理學은 終局을 告한다.

道德 及 道義의 追跡은, 지금 本稿의 目的하는 바 아니다. 우리는 豫定을 짜러, 自由로운 意志의 最初의 段階, 人格을 그 概念으로 하고, 外物을 그 定在로 하는 段階를, 조금 더 詳細히 追跡함으로써, 헤-겔의 私有財産權의 置礎를, 理解하기에 努力하라한다.

七

그러나 豫定の 枚數는 임의 넘었고, 그러타고 本稿 未完으로 남겨 놓는 것도 本意가 아님으로,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詳細하에, 同時에 될 수 있는 대로 簡潔하게, 이 部分에 關한 헤-겔의 理論을 짜러 보라한다.

財産權의 基礎는, 抽象的 權利에서, 定立된다. 抽象的 權利는, 三段의 段階를 經由하여 發展한다, 그 第一은, 所有 Eigentum 오, 第二는, 契約 Vertrag 第三은, 不法 Unrecht 가 그것이다. 이것도 또 辨證法의 正, 反, 合에 應하는 것임은 勿論이다. 不法으로부터, 헤-겔 法理學은, 道德으로 넘어간다.

即自 及 對自로 自由로운 意志-그의 抽象的 概念에 있는-는, 直接性的 規定에 있다. 意志의 特殊性의 要素를 쫓치면, 이 意志는, 一定한 目的을 가진 內容을 前景에 가졌다. 이곳에 直接성에 있다는 뜻은, 그 속에 모든 規定을 包含은 하였으나, 그것이 아즉 包含되었을 뿐으로, 아즉 總體 Totalität 에까지 自己發展을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自由다 라고 할때에는, 道德에잇 서서는, 그 自我는 個別的 意志임으로, 그리고 그것에 對하여는 普遍이 存在함으로, 假令 그 普遍이 自我속에 包含되었을 지라도, 그것은 임의 한 對立物이다. 그러므로 道德에서는, 이것은벌서規定되었고, 짜러서間接성에있다. 그러나發展의初期에는, 이러한 對立이 업고, 짜러서 意志는 直接性的 規定에 있는 것이다. 지금 注意하여야 할 것은, 이 直接性 自體가, 한 規定性이라는 것이다. 何故오하면, 非規定性은, 意志와 그 內容 사이에 아즉 差別이 存在하지안는 곳에 잇으나, 非規定性 自體는 또, 規定된 것에 對立하여, 또한 規定된것이 되라는 規定으로 싸지는 까닭이다. 이곳에서 規定性이 되는 抽象的 同一性을, 意志가, 人格 Person 을 通하여, 個別的 意志이라는 點이다.

人格은, 主觀이, 自我에 關하여, 具體的, 被規定的 自我로서의 自己意識을 가질 뿐아니라, 모든 具體的 制限이 妥當되지 아니하는, 完全히 抽象的인 自我로서의 意識을 갖는 곳에 始作된다. 그런故로 人格 속에는, 對象으로서의

自身에 對한 知識이 있다. 이곳에 對象이란, 思惟에 依하여, 無限性에까지 넘혀진, 짜러서 自身과 純粹同一의인 對象이다.

人格은, 第一, 權利能力 Rechtsfahigkeit 을 包含하고, 抽象的인, 짜러서 形式的인 權利의 基礎가 된다. 이리해 法律의 基礎는, 自身 人格인 同時에, 他人을 人格으로서 尊敬하라는 곳에 있다.

第二, 意志의 特殊性은, 意志의 全意識의 要素임에는 틀림없으나, 抽象的 人格 속에는, 完全히 包含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存在하기는 한다. 그러나 抽象的 人格, 自由의 規定과는, 아주 달이다. 形式的 權利에서는, 故로, 個人的 利益, 幸福 等の 特殊的 利益과, 個人的 意志의 特殊 的 規定 理由은,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第三, 人格의 決定的, 直接的 個別性은, 그 압헤 存在하는 自然과 對立한다. 짜러서 自然은, 主觀으로서의 意志의 人格性에 對立한다. 그러나, 自身 無限이오. 普遍的인 人格에게는, 다만 主觀으로서만 잇고져 하는 制限은, 矛盾이오, 破滅이다. 人格은, 이 制限을 止揚하고, 自身에게 現實性을 주라는 活動이다.

이리해 人格은, 理念이 되기 爲하여, 그의 自由의 外的 領域 Eine aussere Sphäre ihrer Freiheit 을 가져야 한다. 即自 及 對自로 自由로운 意志의 人格은, 이 初段의, 아주 抽象的의 規定에 잇서서는, 그의 自由의 領域을 形成할 수 잇는 것과는, 區別되는 것이다. 所有의 合理性은, 慾望의 滿足에 잇는것이 아니라, 單純한 人格의 主觀性을 止揚하는 곳에 있다. 所有에 잇서서 비로소 人格은 合理的의 것이 된다.

人格의 外的 領域이 되는 그것은, 外的인것 Das ausserliche 一般이오, 物 Sache 이오, 不自由한 것이오. 非人格的의 것이오, 無權利의 것이다. 物은, 人格을 主觀性으로 부터 止揚함으로, 그것은 主觀에 對하야만 外物인 것이 아니라, 그 自身 조한 外物이다. 時間과 空間은, 이 意味에 잇서서, 外的인 것이다. 自我도, 感官的으로는, 外的이오, 時間的이오, 空間的이다.

人格은, 各個의 物우에, 自己의 意志를 定置할 權利를 統合한다. 何故오하면 物은 意志를 갖지아니하였슴으로, 그의 規定, 靈魂으로서, 人格의 意志를 맞는 것이다. 이곳에서 人類의 모든 物에 對한 絕對的 領有權 Absolutes Zueignung-reeht이 成立한다.

直接的 個別的 物에 對하야, 獨立의 意味의 現實性을 주는 哲學, 또는 精神은, 眞理를, 物自體를, 認識치 못한다는 哲學(칸트 派哲學)은, 이곳에서 矛盾이된다. 萬一意識, 直觀, 表象에 對하야, 外物이 獨立的 外見을 갖는다하면, 이에 反하야 自由로운 意志는, 理想主義다. 實在主義는, 物이, 다만 有限

性의 形式을 갖는 境遇에도, 그것이 絶對的이라고 宣言한다. 이곳에서 헤-겔은, 다시 大喝한다. 증생도 이차위 哲學은 안가지고 있다. 왜그러냐 하면, 증생은, 物을 찢고 깨트리고, 그리하여 物은 決코 絶對的, 獨立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證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이 自身속에 外的 權力을 갖고 있다는 것은, 占有 Besitz를 하게한다. 마찬가지로, 自我가, 自然的 慾望, 衝動, 肆意로부터, 物을 自己의 것을 맨드는 것은, 占有의 特殊利益을 形成한다. 그러나, 自由로운 意志로서의 自我가, 物을 占有하고, 그리해 비로소 現實的 意志가 된다는 半面은, 眞正한, 法律的 占有이오, 所有의 規定을 形成한다.

그러면 私有財産은, 엇더한 것인가. 헤-겔에 依하면, 그것은, 個人의 意志, 客觀的 意志가, 所有에 있어서 客觀化하는 境遇에, 이 所有가 갖는 性質이라 한다. 原始的 對象의 利用은, 그 性質上, 私有로 特殊化하지 아니하면, 不可能하다. 이리해 헤-겔은, 私有財産과, 共有財産 Gemeinschaftliches Eigentum 의 鬪爭을 包含한 羅馬의 農業法規에 있어서, 私有財産制度가 보담 合理的의 것이었었다고 斷言한다.

人格인 個人은, 또 그가 意志하는 限, 그 自身の 肉體와 生命도, 다른 物과 마찬가지로 所有할 수 있다. 증생은, 그렇지 못하다. 勿論 증생도, 그의 몸은 所有하였다, 그것은, 증생의 靈魂 Seele 이 증생의 몸을 所有한 것이다. 그러나, 증생은 그의 生命에 對하여야는, 아모러한 權利를 가지라 하지 아니함으로, 아모러한 權利도 가지지 못하였다.

헤-겔은, 所有를 다시 三分하여, 占有 Beutznahme 使用 Der Gebrauch der Sache 所有의 排除(讓渡) Entausserung des Eigentums 로 說明한다. 所有를 爲하여야는, 于先 占有하여야 하고, 占有한 다음에는 使用하여야 하고, 自己에게 無用이 된 때에는, 그 物우에 他

[第八八頁로 續]